#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소(플랫폼)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1700

제출연월일: 2021. 01. 20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2020년 1월 선정된『이팔청춘 마을공방』관광종합정보공유소 운영 민간 위탁 사업자의 2021년 사업 포기에 따라 잔여기간을 운영할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.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소 운영

## 나. 추진근거

-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27조(관광진흥업무의 위탁)
- ○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(승인 및 동의)

## 다. 위탁의 필요성

- 이팔청춘 마을공방은 기존 지역기반 소규모 문화관광 업체의 지속적인 활 성화를 위해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,
- 마을공방 공간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연계하고 상호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중심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이 필요

## 라. 위탁사무 내용

-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소(플랫폼) 운영
- 이팔청춘 마을공방 공간 운영

- 마을공방 프로그램 홍보, 참여 등을 통한 소통창구 활용
- 관광종합공유소를 통한 지역 참여자 및 문화관광사업 자료 구축
- 방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및 채널 확대
- 그 밖에 이팔청춘 마을공방 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## 마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소재지	규모	종사자	시설현황
이팔청춘 마을공방	새즈믄해 거리 28 (성남동)	187.5㎡ (단층)	3명 (대표 1, 관광종합정보 공유소 및 공간 운영 2)	<ul><li>체험 및 전시 공간,</li><li>공유 주방, 소공연,</li><li>사무실 등</li></ul>
위치도	장 먼지 교 호재레 문비성 관명 신협	경남에식장 강남에식장 상사초등학교 상사초등학교 상사 등학교 상징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	문화센터 공명 별별 문화센터 공명 사이어터 의원 사이어를 의원되지 (이 의원 기계	# 전

바. 위탁기간: 2021. 3. 1. ~ 2021. 12. 31.

사.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

아. 소요예산: 50,000천원

#### 4 (제232회-행정자치위제3차부록)

## 자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검 토 항 목	검 토 내 용		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용역 및 서비스 제작·공급 업무는 중앙부처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지정 ○ 관내 문화, 예술, 관광 업체의 참여 및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장 탄력성 및 시장 접근의 개방성이 요구됨으로 민간 위탁이 적절함		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><li>전문지식에 기반한 관광종합정보공유소(플랫폼)의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전성 및 공공성 확보</li></ul>		
3. 경제적 효율성	<ul><li>직접 운영 시 자격을 갖춘 운영 대표자 및 직원을 채용할</li><li>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 예산 필요</li></ul>		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<ul><li>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확보에 용이</li></ul>		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매월 활동 및 운영 보고를 통해 월별 성과 측정 ○ 보조금 정산·보고를 통해 지속적 성과 측정 가능		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관련 법령 및 위·수탁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탁 기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		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	<ul> <li>(지역기반 문화, 예술, 관광 업체) 누구나 관광종합정보 공유소 활용(홍보, 마케팅, 결제, 알림 서비스 등 지원)</li> <li>(이용자) 프로그램 신청자 누구나</li> </ul>		

☞ 종합의견: 관광종합정보공유소라는 전문지식 및 서비스를 통해 마을공방 운영 프로그램 및 콘텐츠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, 양질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내 현장 경험이 많고,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함이 적절함

## 3. 추진일정

-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: 2월
-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: 2월 26일(예정)
- 위·수탁 계약 체결: 3월

#### 4. 참고사항

○「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」제27조 <2020.12.28. 개정>

제27조(관광진흥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1. 관광객 유치
- 2. 관광기념품, 캐릭터상품,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
- 3.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
- 4. 해설사 등 관광인력 교육, 양성 및 운영<개정 2020.12.28.>
- 5.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, 방법,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개정 2020.8.3.>
- ○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
- 제6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.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 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

## 나. 위탁사무 내용

- 이팔청춘 마을공방 관광종합정보공유소(플랫폼) 운영
- 이팔청춘 마을공방 공간 운영
- 마을공방 프로그램 홍보, 참여 등을 통한 소통창구 활용
- 관광종합공유소를 통한 지역 참여자 및 문화관광사업 자료 구축
- 방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및 채널 확대
- 그 밖에 이팔청춘 마을공방 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- 다. 위탁기간 : 2021. 3. 1. ~ 2021. 12. 31.
- 라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
- 마. 소요예산 : 50,000천원

## 4. 근거법규

- 가. 「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」 제27조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1항, 제5조, 제6조, 제7조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중구 관광 플랫폼과 연계하는 이팔청춘 마을공방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「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진흥조례」 제27조에 따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 근 거 법 규

##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

- 제27조(관광진흥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 - 1. 관광객 유치
  - 2. 관광기념품, 캐릭터상품,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
  - 3.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
  - 4. 해설사 등 관광인력 교육, 양성 및 운영
  - 5.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, 방법,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#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- 제6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 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